

## 해외교포 등 국내투자서비스 이용약관

본인은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 이라 합니다)과 『해외교포 등 국내투자서비스』(이하 "서비스" 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이 서비스 약정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### 제 1 조 (적용 범위)

이 약정은 본인이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제 5 조에서 정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
### 제 2 조 (이용자)

이 서비스의 이용자는 실명의 개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비거주자, 외국인거주자 및 대한민국의 재외공관근무자(동거가족 포함)에 한합니다.

### 제 3 조 (이용신청 및 계좌등록)

- 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③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증권회사 계좌는 3계좌 이내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.
- ④ 제 5 조 제1호의 거래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개설하여야 합니다.
- ⑤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좌 및 투자전용 대외계정은 각각 3계좌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출금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4 조 (송금정보 등록)

송금통화 및 수취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해외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등록된 송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5 조 (이용대상거래)

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 종류 및 이체한도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1. 국내상장주식 취득을 위한 증권회사 앞 이체
2. 은행의 국내펀드·예금상품 신규 가입 및 해지
3. 은행에 개설된 계좌간 이체
4.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의 송금

### 제 6 조 (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

은행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### 제 7 조 (적용 기간)

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.

### 제 8 조 (준용 규정)

본인과 은행은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“외환거래 기본약관”, “예금거래 기본약관”,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”, “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”, “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”, “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” 및 “외국환거래법규”에 따릅니다.

### 제 9 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6 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